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행 443~ 76 (전화번호 75-7937)	전결규정	조 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	시	
시행일자			
보존년한			NO 636
보조기관	제2부시장 / 도시계획국장 / 도시계획담당관 / 도시행정과장	협조	법무담당관
기안책임자	박유 80. 3. (이창열)		
경유 수신 참조	각안 참조	발신 80. 3. 31.	통제 1980. 3. 31
제목	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 개정		

제1안 : 내부결재

1. 서울특별시 예규제 383호로 제정공포한

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중 일부를 별첨과

같이 개정코저 합니다.

가. 주요개정 내역

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율 년 20% →

년 35%로 인상 (개월 → 1(개월))

첨부 : 개정안 요지, 개정이유, 개정안, 개정대비표 각 1부 끝

제 2 안 끝

수 신 : 문화공보실장　　발신 : 도시계획국장

제 목 :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및 처분규정중 개정규정 게재의뢰

1.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및 처분규정을 개정하였기 시보에 게재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및 처분규정중 개정규정 1부 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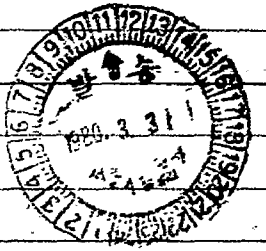

개 정 요 지

1. 체비지 매각 대금 (일시불, 년부) 연체 이자율 년 20% → 35%로 인상 조정

개 정 이 유

1. 이자 제한법 개정 (법 제9714호 : 80.1.12 공포)으로 년 25% → 40%로 인상 조정

2. 내무부 개정 준칙 ——— 년 40%
   (박 시. 도 년 40%)

3. 서울특별시 재무 회계 규칙 ——— 년 35%
   (一般市有財産)

4. 시중 은행 금리 (여신, 수신) 인상 ——— 대출 ——— 년 25%
   연체 ——— 년 30%

법무실 수 1980.3.21 제 11 호

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

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 규정중 개정 규정

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2항 제1호중 "확약시까지 년 20%"를 "납부일 까지 년 35%"로 한다.

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중 "년 2할"을 "년3할 5푼"로 한다.

시장

부 칙

(1) (시 행 일) 이 규정은 [illegible]. 7. 1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히 매각한 체비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